

순천대학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

제정 1992. 1. 23

개정 2007. 6. 2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교원인사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한 순천대학교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단과대학장·대학원장·교무처장·학생처장·기획처장 및 각 단과대학 별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07. 6. 26.)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.

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련 부서의 심사자료를 토대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습활동

2. 학생의 교수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

3.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상태 및 기타 대학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상태

제6조(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 제출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·날인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무처 교무과장이 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(1992. 1. 23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6. 26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